

Ⅲ. 예산총칙



제1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
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계		7,803,593,000	234,107,790
일 반 회 계		7,072,400,000	212,172,000
특 별 회 계		731,193,000	21,935,790
	기 타 특 별 회 계	731,193,000	21,935,790
	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	480,298,000	14,408,940
	치 수 사 업	6,300,000	189,000
	광 역 교 통 시 설	2,563,000	76,890
	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	104,800,000	3,144,000
	학 교 용 지 부 담 금	33,032,000	990,960
	낙 후 지 역 발 전	9,000,000	270,000
	소 방 안 전	95,200,000	2,856,000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,724,000천원으로 한다.

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8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IV. 예산규모

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(△)감	증 감 비 율
계	7,803,593,000	7,437,866,000	365,727,000	4.92%
일 반 회 계	7,072,400,000	6,751,100,000	321,300,000	4.76%
특 별 회 계	731,193,000	686,766,000	44,427,000	6.47%
기 타 특 별 회 계	731,193,000	686,766,000	44,427,000	6.47%
의료급여기금운영	480,298,000	455,902,000	24,396,000	5.35%
치 수 사 업	6,300,000	3,420,000	2,880,000	84.21%
광 역 교 통 시 설	2,563,000	1,563,000	1,000,000	63.98%
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	104,800,000	96,345,000	8,455,000	8.78%
학 교 용 지 부 담 금	33,032,000	34,694,000	△1,662,000	△4.79%
낙 후 지 역 발 전	9,000,000	10,000,000	△1,000,000	△10.00%
소 방 안 전	95,200,000	84,842,000	10,358,000	12.21%